

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서 등의 종류와 발급절차(제48조 관련)

1.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종류

- 가. 위생증명서: 「식품위생법」,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및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(이하 이 표에서 "법"이라 한다)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·생산·가공·관리되고 있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
- 나. 자유판매증명서: 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·생산·가공·관리·유통되고 있는 제품으로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는 제품 또는 수출용으로 제조·생산·가공·관리되고 있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
- 다. 분석증명서: 법에 따라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
- 라. 제조증명서: 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법에 따라 품목제조보고한 내용대로 제조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
- 마.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 지정서: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적합한 업소임을 증명하는 서류
- 바.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 증명서: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
- 사.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 증명서: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임을 증명하는 서류
- 아. 그 밖에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여 증명하는 서류

2.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발급기관

- 가. 수출식품등 위생증명서 등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발급한다. 다만,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 증명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발급한다.
- 나. 가목에도 불구하고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출농산물, 수출수산물 및 수출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증명서의 발급은 그 법령에 따른다.

3.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발급신청

- 가.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에 대한 증명서 등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(이하 "신청인"이라 한다)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수출식품등 위생증명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 증명서의 신청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한다.

- 1) 영업허가·신고 또는 등록증
- 2) 품목제조보고서(기구·용기·포장의 경우에는 검사성적서를 말하며, 농산물·임산물·수산물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허가·등록·신고된 영업소에 납품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말한다)
- 3)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선하증권 등 선적 관련 서류
- 4) 수출식품등 검사성적서(분석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 한함)

나. 검사성적서는 시험·검사기관에서 당해 수출식품등의 법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대한 항목을 검사한 영문검사성적서 원본이어야 하며, 검사목적(수출용), 검사기관명, 제품명(검체명), 의뢰인, 제조업체명, 소재지, 제조번호, 제조일자(소비기한),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 다만, 온라인 등을 통하여 영문검사성적서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문검사성적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.

다.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.

4.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발급

가. 제3호에 따른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발급 신청한 내용이 적합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- 1) 별지 제39호서식의 위생증명서
- 2) 별지 제40호서식의 자유판매증명서
- 3) 별지 제41호서식의 분석증명서
- 4) 별지 제42호서식의 제조증명서
- 5) 별지 제43호서식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 지정서
- 6) 별지 제44호서식의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 증명서
- 7) 별지 제45호서식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 증명서
- 8) 제1호아목의 증명서는 수출 대상국과 협의된 서식

나.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추가 증명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위생증명내용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, 그 내용을 비고란(Remark)에 추가하여 발급할 수 있다.

다. 각 증명서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압인과 외교부에 등록된 발행자 영문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압인(壓印: 찍힌 부분이 도드라져 나오거나 들어가도록 만든 도장)을 생략한다.

라. 해당 증명서는 1부를 발급한다. 다만 제출처가 명확한 경우에는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.

마. 신청인이 증명서에 대해 추가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증명서 우측 상단에 별지 제46호서식의 원본스탬프(ORIGINAL)와 부분스탬프(DUPLICATED)를 각각 적색으로 날인하고 발급할 수 있다.

바. 수출하는 축산물 위생증명서는 수출 대상국과 협의된 조건이 있을 경우 그 조건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, 위생증명서와 위생증명 대상 축산물의 밀봉용기 등에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 수출 검사필증인(Official stamp)으로 표지할 수 있다.